[별표 3] <개정 2020. 8. 25>

법정장학금 지원기준 (제6조 관련)

구분	선 정 기 준	지원내역		
국가 유공자	▷ 대상자: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(국가보훈처 훈령)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,			
	배우자, 자녀, (외)손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			
	— 면제증명서류			
	· 본인, 배우자: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			
	· 자녀, (외)손자녀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			
	– 면제증명서류 발급처: 지방보훈청, 보훈지청, 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(구, 팩스			
	민원) 발급신청, 정부민원포털 민원 24			
	- 신편입생: 해당 증명서 제출자			
	- 재학생: 해당 증명서 제출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			
	– 재입학생: 제적·자퇴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	4년(8학기)		
	▷ 법령 유의사항	[4년(6억기) 간		
	–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: 수업연한 제한 없음, 성적기준 없음	수업료		
	 유공자 (손)자녀: 수업연한 범위만 지원(계절학기 지원제외), 이미 면제받은 	전액 ※ 다만. 5		
	수혜 받은 학기 수 포함하여 연한(8회) 적용			
	> 대상자: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(통일부 지침)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			
	면제증명서류 발급자			
	- 제출서류: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시군구청 발급)	지원		
	- 신땐입생: 해당자			
북한 이탈 주민	- 재학생: 해당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			
	(다만, 본인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(2학기)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			
	장학금 미지급)			
	※ 거주지 보호기간(5년)이거나 대학입학 자격 취득일(고졸 검정고시 합격일, 북한			
	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한 날)로부터 5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의 주민			
	▷ 법령 유의사항			
	– 최초(처음)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			
	–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,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			

1) 어디서나민원 및 민원24로 발급 시 3시간 정도 소요됨